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5. . . (제 회)	

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교통행정과장
제출 연월일	2015. . .

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침

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「영유아보육법」의 개정으로 “보육시설”이 “어린이집”으로 변경되어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의 개정으로 “보육시설”이 “어린이집”으로 변경되어 “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”을 “초등학교,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”으로 정비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(정의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2) 입법예고 결과,
- 3) 부패영향평가결과: 개선권고(반영)
- 4) 성별영향평가결과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 중 “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”을 “초등학교, 유치원 및 어린이집
의 장”으로 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교통지도) 구청장은 관내 <u>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</u> 등에게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·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교통지도) ----- <u>초등학교,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법령

□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(정의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영유아"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"보육"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3. "어린이집"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"보호자"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5. "보육교직원"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